

#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5,041,314	7,351,239
일반회계	204,285,595	6,128,568
특별회계	40,755,719	1,222,672
공기업특별회계	14,944,161	448,32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944,161	448,325
기타특별회계	25,811,558	774,347
수질개선 특별회계	9,251,906	277,557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0,342	3,310
주택사업 특별회계	11,891,704	356,751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57,718	22,732
자활기금 특별회계	1,365,535	40,966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94,567	26,837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67,008	35,01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42,860	10,286
기반시설 특별회계	29,918	89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85,59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